

[2025 현장실습훈련(시니어인턴십)사업 지침 안내]

□ 참여기업 요건

만 60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

□ 참여기업 제외 요건(상세)

-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, 인력파견업체,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, 소비 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 등
-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
 - 단,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,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
 -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관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
 - 고령자 고용지원금, 장애인 근로자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금 산정 기간이 중복될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가능
-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
-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

□ 참여자 요건

- 만 60세(65년 생일이전 출생자) 이상 사무원, 관리자, 제조원, 운전원, 판매원, 조경원 등
 - 참여기업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은 참여 불가
-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
 - 참여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대체 가능

□ 참여자 제외 요건(한국고용직업 직종분류표.2018 제외직종 참고)

-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(참여 기업이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 이전에 채용된 자는 부적격)
-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
(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, 국민취업지원제도 등)
-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(대표자)와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-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
(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)
(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(참여기간 중 30일 이하 일용직근로 제외) 부적격자로 관리)
-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
-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
(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)
-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(참여시작 기준 5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)
-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
(인턴기간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)
-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(국적 취득-주민등록번호 소유자는 참여 가능)
- 인턴십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

□ 제외직종-58개 직종(상세)

의회의원·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, 기업 고위임원 정부행정 관리자, 법률·경찰·소방·교도관리자, 경비·청소관리자, 정부·공공행정 전문가, 회계사·세무사·감정전문가, 조세행정·관세행정·국가지방행정 사무원 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, 학교 교사 3개 직종, 장학관·연구관 및 교육전문가, 법률전문가 5개 직종, 시민단체 활동가,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개 직종, 경찰관·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, 군인 4개 직종, 의사 5개 직종, 약사 및 한약사, 레크리에이션 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, 점술사 및 민속신앙 종사원, 경호·보안 종사자 4개 직종, 경비원,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, 청소원,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, 가사도우미, 제품광고 영업원, 기타 기술 영업·중개 종사원, 온라인 판매원, 노점 및 이동 판매원, 방문판매원, 항공기 조종사, 선장·항해사 및 도선사, 우편집배원

-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
-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
- 파견직 참여 제외(단, 수행기관 위탁없이 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심의 후 참여가능)

□ 기업 신청서류

- 참여기업 신청서(운영계획서 포함)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
- 사업자등록증
- 협약서(원본제출)

□ 참여근로자 제출 서류

- 참여 신청서(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동의서(원본)제출)
- 근로계약서
 - 자사 근로계약서 양식이 별도로 있을 경우 ‘시니어인턴십 인턴약정기간’ 반드시 표기
- 참여자 교육 관리대장(자필서명)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지원금신청 시점에 제출

□ 지원금 신청서류

- 지원금 지급신청서(참여기업용)
- 지원금 신청 인원별 산출내역
- 참여기업 통장사본, 참여자 임금명세서, 급여계좌 이체확인자료 각 1부
- 참여자 근로계약서 사본(원본대조필_직인)
 - 지원금신청서의 근로계약 일자가 포함된 계약서 필수
 - (*근로유지기간내 상실이력이 있거나 이미 퇴사한 경우 지급불가
 - *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이 지원금 신청일자를 포함하여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
 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를 제외하고는 ‘자동연장’은 불인정_당해년도기간명시)

□ 신청절차

- 기업신청서 제출(안양과천상공회의소) 및 협약체결
 - 참여근로자와 계약체결 및 참여신청서(동의서) 제출
(주의 : 협약 전 미리 채용 시 지원 불가)
 - 지원금신청서 제출(3_6_18_24_30_36개월 경과시점별 3개월 이내 지원)
- ※장기취업유지자가 퇴사하기 직전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 보관(지원금신청)

□ 지원내용

일반형	인턴지원금 (1~3개월차)	.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% 지원 (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분) 최대 120만원
	채용지원금 (4~6개월차)	.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.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% 지원 (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분) 최대 150만원
장기취업 유지형	장기취업 유지지원금 (7~36개월차)	.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,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30개월 간(4회) 최대 280만원 지원 * 지원기준(18243036개월 경과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 해 지원)

□ 신청기간 : 2025.01.01.~2025.11(예산소진 시 까지)

□ 신청방법 : e-mail (nooko0322@korcham.net)
홈페이지(www.korcham.net)

□ 안양과천상공회의소 경영지원팀 담당 박혜정(031)447-9182